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 통근·통학·관광 등 체류 유형별 대표 지역 선정하여 시범 산정
-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내년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 민간 주도의 신산업 육성에 활용

-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가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
 -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 통학 1개, 관광 2개, 기타 2개 지역이다.
- 행정안전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여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 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 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가산단과 농공단지를 보유하여 인근 도시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 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과 국비 지원 사업 추진 등 재정·제도적 지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7개 시·군에서 생활인구가 최초로 산정됨에 따라, 인구 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생활인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는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정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담당 부서	지방자치 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형석 (044-205-3501)
		담당자	주무관	최고야 (044-205-3519)



참고 1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선정 결과

유형		지자체명	주요 내용
통근		전남 영암군	- (특성) 대불국가산단 및 3개 농공단지가 있어 제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47.6%를 차지 - (활용)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임대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
		경북 영천시	- (특성) 11개 산업단지 보유 지역으로 최근 5년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상승하는 추세 - (활용) 교통 접근성 증대 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산단 조성 사업에 활용
통학		경남 거창군	- (특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어 타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50% 이상을 차지 - (활용) 지역특화 학교 인프라 확충과 지역교육 거점 기반 구축에 활용
관광		충북 단양군	- (특성)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정주인구 (2만7천 명) 대비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 (활용) 행정수요 예측과 관련 인프라 조성, 축제 콘텐츠 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충남 보령시	- (특성) 대천해수욕장, 보령머드축제 등 우수한 관광자원 보유 - (활용) 관광형 생활인구의 지속적 확대 도모
기타	군인	강원 철원군	- (특성) 군 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 - (활용) 군인 및 군인가족의 소비행태 파악을 통해 지역경제 분석 및 상권 활성화에 활용
	외국인	전북 고창군	- (특성) 영농기 일손 수요 충족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장·단기적 체류 - (활용) 안정적인 근로자 수급 방안 마련 등에 활용

□ 추진배경

-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 활용 필요
-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도입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23.1.1. 시행),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23.5.18.)

□ 생활인구 개념(「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 (주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체류하는 사람)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 1회(시행령), 하루 3시간(고시) 이상 머무는 사람

< 체류시간 기준(하루 3시간) 근거 >

- ▶ (활동별) 일(3시간1분), 학습(3시간29분), 여가(3시간39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수준(약 3시간) 고려(통계청, '20년)
- ▶ (지역별) 인구감소지역(4시간47분), 관심지역(3시간52분) 방문자는 평균 3~4시간 정도 체류(한국관광공사, '22년)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시행령 제2조제2항)

□ 향후 일정

- 일부(7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생활인구 시범 산정(~'23.下)
- 시범 산정 결과 분석·보완 후,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산정('24년)